

국내석유제품 가격인하와 향후유가 관리방안

洪 起 斗

〈동력자원부 석유정책과 행정사무관〉

1. 머리말

정부는 지난 11월 2일 0시를 기해 세전공장도 기준 5.33%, 소비자 가격 기준 4.7%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油價인하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油價인하는 지난 3월, 6월에 이어 단행된 금년 세번째 油價인하이며, 이로써 국내석유류 가격은 연초에 비해 공장도기준 21.8%, 소비자 기준 19.7%나 인하되었다.

이번 인하의 특징은 연초 이미 발표된 바 있는 환율연동제의 계속적 시행, 국내 석유제품 가격구조의 국제 수준 접근 및 아스팔트 가격의 자율화를 들 수 있다.

본고는 우선 금년 油價인하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금년 유가인하 결정과정에서 정부가 검토 고려한 바 있는 사항들을 밝혀 두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2. 조정 배경

정부는 '88년 6월 油價조정시 '88년 하반기중 평균 원유도입가를 배럴당 16\$로 보고 평균 환율 710원/\$을 전제로 하여 '88년 신규 기금징수액을 6,700억원으로 전망하고 이중 5,000억원을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 예탁하여 농·어촌 등 낙후부문 지원 재원으로 사용키로 하였다. 그러나, 9월 이후의 국제원유가 급락에 따라 약 2,000억원의 추가 기금이 전망인 만큼 동 재원을 유가적용환율의 하향조정을 통해 국내유가를 인하시킴으로써 물가안정기반을 확충하고 동시에 계속적인 환율 하락에 따라 약화된 국제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금년 油價인하조치는 정부가 연초에 발표했던 油價의 환율연동제 방침을 감안하여 10월부터 벌써 언론기관에서 예측하여 온 바 있다.

3. 조정 원칙

정부가 이번에 석유류 가격을 조정하면서 적용한 원칙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기준원유가: 현 OPEC 공시가인 18\$/B
- 석유사업기금: 석유사업법상 필수 소요 총당분인 0.5\$/B

(단, 정산익회수분 및 기준원유가와 실도입 원유가의 차액은 별도로 징수)

- 관세율: 현행 적용 긴급관세율 10%

○환율 : 695원 / \$

○유종별 가격조정 : 국내油價 구조의 국제화 및 타에너지와의 적정 상대가격 유지를 위한 유종별 차등인하율 적용

4. 조정 효과

이번 油價인하에 따라 예상되는 파급효과는 소비부문별로 산업 837억원, 수송 501억원, 가정 및 상업 282억원 등 연간 총 1,827억원의 부담이 경감되고, 도매물가 0.25% 및 소비자물가 0.03%의 직접인하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조업전체로는 0.24% 운수업은 1.16%의 원가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表-1〉 소비부문별 油價인하 혜택

	산업	수송	가정·상업	공공·기타	전력	計
油價인하 혜택(억원)	837	501	282	107	100	1,827

〈表-2〉 제조업종별 원유부담 경감효과

	섬유	유지	제지	식품	기초화학	합성수지	비철금속	철강	제조업평균
直接投入비중(%)	1.5	2.9	1.3	25.0	2.5	2.9	2.2	2.47	
原價 절감(%)	0.15	0.28	0.13	2.43	0.24	0.28	0.21	0.24	

〈表-3〉 주요국별 석유제품 소비자가격 비교 (단위:\$/B)

	국내 가격		국제 가격		
	조정전	조정후	日本	臺灣	西獨
휘발유(보통)	94.3 (104)	90.7 (100)	139.6 (154)	68.7 (76)	80.3 (89)
등유	42.7 (102)	42.0 (100)	52.4 (125)	57.7 (137)	-
경유(저유황)	41.8 (102)	41.1 (100)	79.2 (193)	55.0 (134)	75.2 (183)
B-C油()	23.5 (110)	21.2 (100)	27.2 (128)	20.9 (99)	17.1 (81)
프로판(\$/톤)	631.7 (107)	589.2 (100)	1,584 (269)	629.1 (107)	-

〈주〉 () 내는 이국가격(조정후)=100일때의 지수

더우기 이번 油價인하로 국내 석유제품가격은 주요 경쟁국인 日本 및 臺灣의 석유가격에 비해 계속 저렴한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5. 금번 油價조정의 특징

이번 油價조정의 특징은 다음 몇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1) 유종별 차등 인하율 적용

이번 油價조정시 국내 석유가격 구조 개선을 위해 유종별로 인하율을 크게 격차를 두었다.

우선, 국내 석유제품가격의 자율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국내 유종간 가격구조를 국제가격구조에 접근시키 나가기 위해 현재 국제가격보다 높은 LPG 및 B-C유의 인하폭을 확대하였다. 이와같은 목적을 위해서는 휘발유가격 인하폭이 보다 커야 하나 내년 초 휘발유 특소세율 하향조정에 따른 휘발유가격의 추가인하가 불가피한 만큼 이번 油價조정에서는 평균인하율 수준만 반영

기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특소세율 하향조정에 따른 휘발유 가격 추가인하는 소비자가격인하만으로 끝날 수 밖에 없고 공장도가격인하는 있을 수 없음을 감안할 때 유종간 가격구조 개선 측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다.

두번째로는 燈油·輕油가격 인하폭이 최소 수준으로 억제된 점이다. 등·경유에 대하여는 가정과 수송부문에서 사용하는 연료이긴 하지만 현재 등·경유의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30%정도 저렴한 상태에 있으며, 특히 경유의 경우에는 국내유일의 부존자원인 무연탄과의 상관관계가 있어 경유를 대폭 인하할 경우 국내 탄광업계의 경영에 어려움을 주는 점을 감안하여 인하폭을 최소화하여 반영한 것이다.

등·경유 인하폭을 최소화하여 조정하는데 대하여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측도 있었다. 우선, 공공요금 인상요

인 흡수를 위해 등·경유 인하폭을 확대해야 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등·경유 인하 역제로 서민 연료인 연탄가격이 인하되지 못할 바에야 등·경유가격 인하를 통해 서민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연탄과의 상대가격보다 유종간 가격구조를 정상적으로 유지되게 하기 위하여 서민연료라는 이유로 등·경유가격을 저가로 유지하는 정책은 포기돼야 한다는 주장의 정당성을 뒤엎지는 못 하였다. 주변 상황이 이와 같았음에도 이번 油價조정시 유종별로 현격히 차이가 나는 차등인하율을 적용하여 국내油價구조를 국제가격구조에 크게 접근시켰음은 정부의 가격구조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강한 것인가 하는 점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表-4〉 석유제품 공장도가격구조 국제비교

(단위:지수, 경유가격=100)

	국내가격구조		국제 가격 구조				
	조정전	조정후	P.G	S.P	日本	臺灣	西獨
휘발유(고급)	165	160	104	104	197	142	117
휘발유(보통)	127	124	-	89	150	123	105
등 유	110	110	100	103	104	107	-
경유(저유황)	100	100	100	100	100	100	100
B-C油()	64	59	49	62	54	41	49
프 로 판	83	75	-	75	-	106	-

(2) 아스팔트 가격의 자율화

정부는 이번 油價조정시 아스팔트를 정부가격 고시대상에서 제외시켜 아스팔트가격을 자유화시켰다. 이는 동제품의 제조업이 실질적으로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으며(2,000B/D이하는 신고대상이나 아스팔트 제조업의 경우 현재 수요로는 2,000B/D이상의 제조시설은 현실적으로 불필요하다), 수출입 역시 전면 개방된 만큼 공급자의 독과점현상 및 이에 따른 불합리한 가격상승이 발생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아스팔트 가격 자유화는 '88년 7월 나프타가격 현실화 및 '88년 6월 전국균일수송비 제도 폐지 등과 함께 급변 석유 가격 자율화 정책의 주요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스팔트 가격이 자유화됨에 따라 전체 석유제품 중 20%에 상당하는 양(나프타, 용제, 항공유, 아

스팔트)이 시장경쟁가격에 의해 거래되게 되었다. 한편, 그동안의 국내 석유가격구조의 개선으로 국내 석유가격구조가 국제구조에 많이 접근된 만큼 앞으로 제품별 가격 자유화 대상은 크게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시현 환율 적용 원칙의 완화

그동안 정부는 油價조정시점의 시현 환율을 油價에 적용시켜왔으나, 이번 油價조정시 시현 환율보다 시현이 예상되는 전망 환율을 적용하였다. 이와 같은 시현 환율 적용 원칙의 완화는 원화 가치의 계속적인 절상 전망 및 이에 따라 확대되는 유가 정산익 축소를 위해 취해진 조치이다.

시현 환율 주의는 환율의 자의적 적용에 의한 무분별한(물가안정 등 정책적 수단으로 油價인하가 무분별하게 단행되는) 油價 조정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요즘 같은 급속한 원화 절상시에는 정산익을 확대시키는 단점을 야기시킨다. 따라서, 이번 시현 환율 적용 원칙의 완화는 확실히 시현될 수 있는 환율을 적용한다는 범위를 넘어서 무분별한 油價조정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실제로 급변 유가인하 작업시 일부에서는 유가 인하를 통한 물가안정 효과 극대화를 위해 소비자 가격기준 油價인하율을 5%이상으로 하기위해 油價적용환율의 하향조정을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와 같은 의도적 가격조정을 위한 수단으로 시현 환율 적용 원칙의 완화가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6. 향후 油價관리방안

정부는 에너지資源 貧國으로서의 우리 경제의 취약성을 감안하여 國際原油價 하락에도 불구하고 原油價 재안 등에 대비하여 원유가 하락분을 石油事業基金으로 흡수하여 왔으며, 이를 통해 조성된 재원은 原油비축등 에너지 안정공급기반 구축에 사용하는 한편 잔여분을 산업구조조정 및 농·어촌등 낙후부문 지원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國際原油價 하락효과를 非石油소비자를 포함한 경제전반이 향유토록 하여 왔다.

정부는 '89년에도 原油導入價 15.5\$/B, 환율 680원/\$을 전제로 하여 신규기금 미수액을 8,200억원으로 전망하고 이중 5,500億원을 '89財政投融资特別會計에 예탁하여 농·漁村 등 낙후부문 지원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89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여 국회심의를 요청중이다.

정부는 原油導入價 및 환율하락이 가속화되어 현재 전 망하고 있는 原油導入價 15.5\$/B, 換率 680원/\$ 보다 낮게 됨에 따라 추가 조성이행이 발생할 경우 油價 추 가인하를 검토할 방침이다.

7. 부 언

이번 油價인하 후 인하폭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 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즉, 기준원유가를 하향조정할 경 우 약20%의 추가인하요인이 있음에도 이를 油價에 반영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선 다음 몇가 지로 그 주장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싶다.

• 현재 실효원유가 12\$/B은 정상적인 수준으로 보 기 어려운 만큼 기준원유가와 실효원유가의 차액을 유가에 반영시킬 경우 실효원유가 인상시 국내유가 인상이 불가피 하다.

• 油價인하 후 실효원유가 인상으로 국내유가 인상요인 발생시 기초성되어 있는 석유사업기금을 사용하여 국내 油價제인상없이 국내 油價의 현 수준 유지가 가능하지 않는가 하는 지적은 우선, 현재 우리 油價가 타국에 비 해 높은 수준이 아닌만큼 油價 추가 인하의 불가피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와 같은 주장은 저원유가의 혜택을 석유소비자가 향유해야 한다는 논리 가 되는데, 소득 재분배 및 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저원유가의 혜택은 국민 전체가 향유토록 함이 타당하다.

• 우리와 같이 비산유 자원 빈국으로서 낮은 수준의 석유가격 유지는 에너지이용의 비합리성을 증대시켜 경 제 안정 기반을 저해할 위험성이 크다.

이번 油價인하와 관련하여 또 하나 꼭 지적하고 넘어 가야 할 사항이 바로 언론의 무책임성이다. 油價인하 공 식 발표 2주전부터 각 언론매체에서는 경쟁적으로 油價 인하율 · 油價인하시점에 대해 보도했으나, 실제 결과를 맞춘 언론은 없었다. 물론 油價인하율 5%수준등과 같은

〈表-5〉 유종별 가격 조정내역

	세전가격(UTC포함)			공정도 (원 / l)	세 액(원 / L)		정유사 판매가 (원/l)	마진+부가세		소비자가격(원 / l)		
	현행	조정	인하율%		특소세	부가세		대리점	주유소	현 행	조 정	인하율%
고 급 휘 발 유	221.69	210.78	4.92	210.78	210.78	42.16	463.72	23.65	38.63	550	526	4.36
보 통 휘 발 유	170.89	163.62	4.25	163.62	163.62	32.72	359.96	18.28	23.76	418	402	3.83
무 연 휘 발 유	174.80	166.94	4.50	166.94	141.90	30.88	339.72	23.65	38.63	418	402	3.83
군 용 휘 발 유	192.66	183.83	4.58	183.83	-	-	183.83	-	-	192.66	183.83	4.58
등 유	147.93	145.20	1.85	145.20	-	14.52	159.72	10.60	15.68	189	186	1.59
경 유 (0 . 4)	134.06	131.56	1.86	131.56	11.84	14.34	157.74	8.95	15.31	185	182	1.62
경 유 (1 . 0)	131.38	128.87	1.91	128.87	11.60	14.05	154.52	9.64	14.84	182	179	1.65
경 질 중 유 (1 . 6)	118.54	114.18	3.68	114.18	-	11.42	125.60	7.91	-	138.30	133.51	3.46
경 질 중 유 (2 . 0)	116.66	112.30	3.74	112.30	-	11.23	123.53	7.91	-	136.24	131.44	3.52
중 유 (1 . 6)	100.68	93.54	7.09	93.54	-	9.35	102.89	8.10	-	118.85	110.99	6.61
중 유 (3 . 0)	96.99	89.85	7.36	89.85	-	8.99	98.84	8.10	-	114.79	106.94	6.84
B - C (1 . 6)	86.37	77.24	10.57	77.24	-	7.72	84.96	9.10	-	104.11	94.06	9.65
B - C (2 . 5)	84.85	75.88	10.57	75.88	-	7.59	83.47	-	-	93.34	83.47	10.57
B - C (4 . 0)	82.31	73.61	10.57	73.61	-	7.36	80.97	8.17	-	98.71	89.14	9.70
프 로 판 (일 반)	111.903	99.075	11.46	195.03	15.60	21.06	231.69	85.42	97.89	445	415	6.74
(도 시)	(129.46)	(112.06)	(13.44)	112.06	8.96	12.10	133.12	-	-	153.80	133.12	13.44
부 탄 (일 반)	127.056	112.462	11.49	194.57	15.57	21.01	231.15	61.85	-	323	293	9.29
(도 시)	(123.03)	(106.33)	(13.57)	106.33	8.51	11.48	126.32	-	-	146.16	126.32	13.57
나 프 타	74.01	70.07	5.33	70.07	-	7.01	77.08	-	-	81.41	77.08	5.32
고 시 품 목 계	110.744	104.867	△5.31%									
아 스 팔 트	110.74	99.03	10.57	99.03	-	9.90	108.93	-	-	121.81	108.93	10.57
J E T A - 1	120.76	114.32	5.33	114.32	-	11.43	125.75	-	-	132.84	125.75	5.33
J P - 4	159.82	151.30	5.33	151.30	-	15.13	166.43	-	-	175.80	166.43	5.33
용 제	99.30	94.01	5.33	94.01	-	9.40	103.41	-	-	109.23	103.41	5.33
비 고 시 품 목 계	125.761	117.359	6.68									
총 계 (원 / L)	111.641	105.613	△5.40%							155.866	148.613	△4.65%

註 : 환인반영 : △ 32 → △ 18원/B

대체적인 흐름은 틀리지 않지 않았느냐는 주장이 나올 수 있겠지만, 언론의 정확성의 수준이 그 정도라는 것을 국민이 알았을 때 만족스러워 할 국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와같은 불확실한 언론보도에 대한 책임은 물론 언론 자체에도 있겠으나, 부처간에 업무에 대한 생색이라는 병폐가 더 큰 요인이었는지도 모른다.

〈表-6〉 유가표 세부내역

항 목	(1)현행률	(2)조정률	차이(2-1)	11월시행
○원유대(원/B)	17,042	16,086	△956	18,269
원 유 대(\$/B)	22.6886	22.6886	-	25.9765
1. FOB	18.00	18.00	-	11.42
2. 운 임	0.8267	0.8267	-	0.8267
3. 보험료	0.0371	0.0371	-	0.0242
(C I F)	(18.8638)	(18.8638)	-	(12.2709)
4. 기 금	0.50	0.50	-	11.15
5. 관 세	1.8864	1.8864	-	1.2271
6. 부 대 비	0.6035	0.6035	-	0.3926

항 목	(1)현행률	(2)조정률	차이(2-1)	11월시행
7. 연료감포	0.8349	0.8349	-	0.9567
* 환 율	(736.3)	(695)	(△41.3)	(695)
원화표시 원유비	16,706	15,769	△937	18,068
금 용 비(\$/B)	336	317	△19	201
1. USANCE이자	169	160	△9	101
2. USANCE환차손	-	-	-	-
3. 국내차입이자	167	157	△10	100
○정 제 비(원/B)	675	687	+12	△1,496
○가스안전기금	21	21	-	21
○품질수수료	10	10	-	10
○기타(비용차감)	△1,278	△1,266	12	△3,449
- '87 정산익	△1,076	△1,076	-	△1,076
- '88가정산익	-	-	-	△1,312
- 나프터환급익	△202	△190	12	△1,061
총 원 가(원/B)	17,717	16,773	△944	16,773
총 수 익(원/B)	17,717	16,773	△944	16,773
조 정 율(%)	0	0	△5.33%	0

〈表-7〉 석유사업기금 징수액 조정

	1988. 9월	기 금 징 수 액 조 정			비 고
		인하 전	인하 후	차 이	
○석유사업법상 필수 사업추진기금	0.50	0.50	0.50	-	
○원유도입가 차액환수	6.61	8.58	8.58	-	
○환차익 회수	1.30	1.49	-	△1.49	전액 유가인하에 반영 (736.3→695원/\$)
○정산익 회수	1.93	2.07	2.07	-	
計	10.34	12.64	11.15	△1.49	유가 5.33% 인하

믿는 마음 지킨 약속
다져지는 신뢰사회